

사본

학교법인 만경학원 이사회 회의록 (2014년도 제 3회)

1. 일 시 : 2014년 2월 27일 16시

회의소집통보일시	2014. 2. 14
이사정수 8명	재적이사 8명

2. 장 소 : 만경고등학교내 법인실

3. 참석이사 : 5명 (이사장 남궁숙
이사 김용선, 최문호, 김택령, 이상우)

4. 불참이사 : 3명

5. 안 건 : 가. 교원 명예퇴직의 건
나. 교원 전보의 건
다. 교장 임명의 건
라. 기간제교사 면직의 건
마. 기간제교사 임용의 건

회 의 전 말

간사(고행정실장) : 이사정원 8명 중 5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사장 개회 선언

이사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제3회 만경학원 이사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회의록 낭독 인준

간사 : 2014년도 제2차 이사회 안건인 2013학년도 제1회 법인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2014학년도 법인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2013학년도 제3회 만경중 학교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2014학년도 만경중 학교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2013학년도 제3회 만경고 학교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2014학년도 만경고 학교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법인감사 선임의 건, 정관변경의 건, 대우사무직원 선발의 건은 2014년 2월 5일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교원 명예퇴직의 건

의 장 : 간사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간 사 : 전북교육청 교원인사과-2937(2014.02.12)에 의거 2014년 2월말 사립교원 명예퇴직자가 결정 통보됨에 따라 명예퇴직을 신청한 만경중 체육교사 ‘진광일’과 만경고 과학교사 ‘전성훈’의 명예퇴직이 결정되었습니다. 만경중학교 체육교사 진광일은 1956년 3월 24일 생으로 1982년 3월 1일부터 본 법인에 재직하였으며, 만경고등학교 과학교사 전성훈은 1958년 9월 23일 생으로 1985년 11월 20일부터 본 법인에 재직하였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본 법인 정관 제50조의 4항의 교원 명예퇴직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14년 2월 28일자로 명예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의 장 : 간사의 설명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선 : 교육공무원법 및 본 법인 정관에 의거한 명예퇴직이므로 2014. 2. 28일자로 면직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최문호 : 동의에 재청합니다.

이상우 : 이의 없습니다.

의 장 : 참석이사 전원 찬동으로 만경중학교 체육교사 ‘진광일’과 만경고등학교 과학교사 ‘전성훈’은 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본 법인 정관 제50조의 4항의 명예퇴직 규정에 의거 2014. 2. 28일자로 명예퇴직으로 면직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교원 전보의 건



의 장 : 간사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 2014학년도 교원 전보는 만경중학교 및 만경고등학교 정기 인사로 만경중학교 윤리과 ‘남궁윤’이 만경고등학교로 전보하고, 만경고등학교 윤리과 ‘강영화’가 만경중학교로 전보하게 됩니다. 만경학원 교원인사내규에 전보는 4년이지만 윤리과는 만경중·고 윤리교사 상호 협의에 의하여 1년 연장하여 5년 만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최문호 :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인사교류이고 학사 일정에 맞춘 것으로 사료되는 바, 만경중학교 및 만경고등학교 학교장이 제정한 전보발령이니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택령 : 만경중·고의 교육과정에 필요한 전보 발령에 별 문제가 없으므로 최문호 이사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용선 : 동의에 재청합니다.

이상우 : 이의 없습니다.

의 장 : 이사 전원 찬동으로 2014년 3월 1일자로 만경중학교 윤리교사 ‘남궁윤’은 만경고등학교로 전보하고, 만경고등학교 윤리교사 ‘강영화’는 만경중학교로 전보 발령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교장 임명의 건

의장 : 간사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전라북도교육청의 2014학년도 사립학교 교장 자격인정대상자 추천 및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추천대상자 추천기준에 의거 현재 만경중 교장직무대리를 수행하고 있는 '이금연'을 대상자로 추천한 바, 교원인사과-4417(2014.02.20)에 의거 교장자격 인정제에 의한 교장자격증을 취득하였기에 본 법인 이사회에서 2014년 3월 1일자로 만경중학교 교장으로의 임용 여부를 심의해야 합니다.

자격 인정 단서 조항으로 자격증 수여 조건이 6개월 내에 만경중학교 교장으로 임용 해야 하며 계속 1년간 근무하여야 하고, 6개월 내에 자격연수를 이수해야 합니다.

의장 : 간사의 설명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 2014년도 제1회 법인이사회에서 교장자격인정대상자 및 교장자격연수대상자로 추천되어 현재 만경중학교 교장직무대리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교장자격증을 취득하여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만경중학교 교장직무대리인 '이금연'을 만경중학교 교장으로 임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최문호 : 이상우 이사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용선 : 동의에 재청합니다.

김택령 : 이의 없습니다.(참석이사 전원찬동)

의장 : 참석이사 전원 찬동으로 현재 만경중학교 교장직무대리인 '이금연'을 2014년 3월 1일자로 만경중학교 교장으로 임용하고 6개월 내에 자격연수를 이수하여야 하며 1년 간 만경중학교에 근무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기간제교사 면직의 건

의장 : 간사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2013년 2학기 교과 편성과정에서 영어과 교사인 '조종곤'이 교감으로 승진하게 됨에 따라 2013년 9월 1일자로 임용한 영어과 정원외 기간제교원 '박상은'의 계약기간이 2014년 2월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면직하게 되었습니다.

김용선 :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면직하는 것이므로 만경고 영어과 기간제 교사 '박상은'을 2014년 2월 28일자로 면직하는데 동의합니다.

이상우 : 김용선 이사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택령 : 동의에 재청합니다.

최문호 : 이의 없습니다.

의장 : 참석이사 전원 찬동으로 만경고등학교 영어과 기간제교사 '박상은'은 계약기간 만료로 2014년 2월 28일자로 면직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기간제교사 임용의 건

의장 : 간사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2014학년도 1학기에는 만경중학교 체육과 정원외 기간제 1명과 만경고등학교 영어과 정원외 기간제 1명을 임용해야 합니다. 먼저 만경중학교는 2014년 2월말로 체육교사가 명예퇴직하여 2014년 1학기부터 체육과 교사가 공석이며, 만경중학교 영어과는 2013학년도 2학기와 동일하게 수업시수가 많아 재직중인 영어과 교사 1명이 전 학년의 영어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워 기간제교사를 요청한 바, 교원인사과-3059(2014. 02. 13)에 의거하여 전북교육청으로부터 정원외 기간제교원이 각각 1명이 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2월에 전북교육청의 기간제교사 인력풀에 등재된 자를 자격 대상으로 채용 공고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을 실시한 결과 만경중학교 체육과는 '박현상'과 만경고등학교 영어과는 '박상은'이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만경중 체육과 기간제교사 임용기간은 2014년 3월 1일 ~ 2014년 7월 23일, 만경고 영어과 기간제교사 임용기간은 2014년 3월 1일 ~ 2014년 7월 22일입니다.

김택령 : 2014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에 필요한 인원으로 공고를 거쳐 서류 및 면접을 통해 충분한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최종 합격하였으므로 만경중 체육과 '박현상'과 만경고 영어과 '박상은'을 임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우 : 김택령 이사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최문호 : 동의에 재청합니다.

김용선 : 이의 없습니다.(참석이사 전원찬동)

의장 : 참석이사 전원 찬동으로 2014학년 1학기 정원외 기간제 교사로 만경중학교 체육과 '박현상'은 2014년 3월 1일 ~ 2014년 7월 23일까지 임용하고, 만경고등학교 영어과 '박상은'은 2014년 3월 1일 ~ 2014년 7월 22일까지 임용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위 회의의 전말을 기록하고 사실과 틀림없음을 인정 이에 서명 날인함.

2014년 2월 27일 16 시 50 분

이사장 남궁숙(인) 남궁숙

이사 김용선(인) 김용선

이사 최문호(인) 최문호

이사 김택령(인) 김택령

이사 이상우(인) 이상우

원본대조필	별인실장이사장
	